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17호
- 나. 발 의 자 : 이윤희 의원 외 37명
- 다. 발의일자 : 2016년 11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2.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제5조)
- 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수의계약 체결 및 우선구매 등 여성기업 우대를 위한 사항들을 명시한 것임.

나. 여성기업의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와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¹⁾
-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총 1,335,591개로 전체 사업체 중 39.1%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 38.5%, 2011년 38.8%, 2012년 38.9%에 비추어 보면 점진적으로 여성기업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울은 252,069개(18.9%), 경기도는 272,224개(20.4%)가 위치하고 있음.
- 전체 여성사업체 중 대기업은 187개(0.01%)이고 중소기업은 1,335,404개(99.99%)이고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1,211,280개, 90.7%)에 해당되며, 업종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436,338개, 32.7%)과 ‘도매 및 소매업’(394,335개, 29.5%)이 전체 여성사업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 이처럼 여성기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규모면에서 영세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업종도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여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요구됨.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경영자와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많은 제약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에 제정되었음.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론(제1조~제7조)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제8조~제12조)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관한 사항(제13조~제20조), 여성기업의 확인 및 처벌에 관한 사항(제20조의2~21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총론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의 목적과 지원대상 등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토록 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제8조),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9조), 자금지원(제10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제11조),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제1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여성의 창업촉진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제8조 제1항) 창업지원에서는 여성창업자 및 창업우수자를(제8조 제2항), 자금지원에서는 여성기업(제10조)을 우대토록 하여 여성기업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게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총론적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제7조)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제8조~제10조)로 구분될 수 있음.
- 안 제2조는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서울시장에게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균등한 사업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서울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및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

과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여성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제1항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시에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총액의 3%를 여성기업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치구와 공공기관에 홍보와 지도를 규정하여 생산품 등 여성기업 관련 정보와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에 대한 매뉴얼의 보급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종합의견

- 여성기업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성기업 지원과 경영활성화를 부족함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영환경에서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의 경우 여성기업 만을 위하여 수립된 정책과 사업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의 여성기업 우대 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의의가 충분하며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